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국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9일, 권칠승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0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2.18.)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4.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426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6.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권칠승의원)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현행법상 계엄 해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할 방법이 없어 계엄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음.

이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헌법 제77조제5항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관한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신설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검토보고서 참조

###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함께 제출토록 하고, 계엄 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며,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법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